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전석기 의원
- 나. 의안번호 : 제1385호
- 다. 발의일자 : 2020. 4. 1
- 라. 회부일자 : 2020. 4. 8

2. 제 안 사 유

- 본 개정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초간 손을 씻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2019년 9월 조사 결과 올바른 손 씻기를 지키는 시민은 2%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인한 손 씻기에 사용되는 수도물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올바른 손 씻기를 적극 실천하도록 하여 시민의 감염병 예방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2020년 3월 31일 현재 148개국에서 확진자 770,138명, 사망자 36,796명이 발생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 세계적대유행(팬데믹)을 선포하였음.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국가적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초간

손 씻기와 마스크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보건복지부 2019.2.)는 점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및 일부 공공시설 이용자를 위한 마스크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으나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는 단순 홍보에 그쳐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실효성 있는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손 씻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수도사용량을 서울시가 감면 방식으로 책임지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추가요금의 부담 없이 30초간 올바르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전파를 최소화 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는 세대 당 1개월간 약1톤 정도의 물을 추가로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정용 수도에 대한 감면 대상과 감면 정도는 감염병의 위험성에 따라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함.

근래에 발생한 세계적인 감염병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2009년 신종플루(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2019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대략 5년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음.

3. 주 요 내 용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감염병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정용 수도 사용료를 서울시가 지원 감면 할 수 있게 함(안 제31조제1항제11호).

4. 참 고 사 항

-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 발령 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손 씻기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손 씻기로 인해 증가된 수도물 사용량에 대해 수도요금(가정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수도요금 감면 관련 규정

-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직영기업으로서 수도물 생산·공급이 설치목적 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목적 이외의 경비인 수도요금 감면은 해당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도록 법률상 규정¹⁾되어 있음.
-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8개 대상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이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수용가, 아리수 음수대 설치 초·중·고등학교는 공기업목적에 따른 자체 감면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소방 용수 시설,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독립유공자는 일반회계 보전 감면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1) 「지방공기업법」 제1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대상별 수도요금 감면 현황 및 시행시기(2020.1월 기준)>

연번	감 면 대 상	감 면 내 용			비 고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구경별기본요금 50% 각 요금별로 세대당 월 10m ³			일반회계 보전감면
2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각 요금별로 월 사용량의 20%			”
3	소방용수 시설	구경별기본요금 전액	-	-	”
4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각 요금별 월 화장실 이용인원 × 9/1,000m ³			”
5	독립유공자	각 요금별로 세대당 월 10m ³			”
6	자가검침 수용가	납기별 600원/회			자체감면
7	전자고지 수용가	부과금액의 1%	없 음	없 음	”
8	아리수음수대 설치 초·중·고등학교	사용량의 20%	없 음	사용량의 2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도요금 감면 확대(2012년 3월)
: 구경별기본요금 50% → 세대당 월 10m³

-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3개 대상²⁾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한 일반회계 등의 보전은 상위법령에 강행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면액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9년 12월말 기준 일반회계 미보전액은 1,098억 5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요금 인상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수도요금 감면액 일반회계 미보전 현황(2019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계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소방용수 시설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
금액(백만원)	109,805	41,918	1,940	59,227	19	6,701
비 고	-	미보전	미보전	미보전	보전	감면 중단

※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은 2011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납부로 보전

※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은 한시 감면 조항으로 2011년 1월 이후 감면 중단

2) '11년부터 서울시설공단에서 직접 납부로 보전 중인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제외

- 이에 상위법령 규정을 따르고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291회 임시회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고 동 조례를 개정³⁾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감면액 보전 여부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음.

2) 감염병 심각 단계 발령 시 손 씻기로 인한 수돗물 사용량 감면(안 제31조제1항제11호)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 세계적대유행(팬데믹)을 선포했고 국내에서도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31조제1항제11호와 같이 감염병 심각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손 씻기에 소요되는 수돗물 사용량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서울시가 손 씻기에 대해 단순 홍보나 권고에 그치지 않고 손 씻기로 인해 추가되는 수도요금을 부담함으로써 외출 후 손 씻기 생활화 여건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20.3.26 시행

-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상수도 자체 감면이 아닌 일반 회계 등 보전 감면 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 조항 신설을 위해서는 시 예산 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감면액 보전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감면액 보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회신한 바 있음.

또한, 외출(3회/일⁴) 후 손 씻기에 따른 가구당(2.29명) 수도물 사용량과 수도요금은 1개월 기준 735L, 680원 정도 증가되고 본 조례안에 따라 수도요금(상수도요금⁵)을 감면할 경우 가구당 감면액은 월 265원 수준에 지나지 않아 손 씻기 생활화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그 실효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됨⁶).

반면, 외출 후 손 씻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서울시 430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감염병 심각 단계가 수개월 간 지속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액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⁷)이 증가될 우려가 있을 것임.

외출 후 손 씻기 수도물 사용량 및 수도요금 증가(가구당 1개월 기준)
 [가정 : 1일 3회 외출, 출수량 0.119L/s⁸), 손 씻기 30s, 2.29명/가구, 가구당 1개월 평균 사용량 및 상수도요금 13.4톤, 5,904원]

- 사용량 : $0.119\text{L/s} \times 30\text{s} \times 3\text{회/일} \cdot \text{명} \times 30\text{일/월} \times 2.29\text{명} = 735\text{L/월}$
- 수도요금(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 약 680원/월
- 수도요금 중 상수도요금 감면액 : 265원/월

4) 본 조례안에서는 1일 손 씻기를 4회로 가정하지만, 실제 외출 횟수를 감안하여 평균 3회로 계산
 5) 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의 합계로 구성되며, 이중 상수도요금은 수도요금의 약 39.0%에 해당
 6) 수도요금 감면이 손 씻기 생활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의문
 7) 1일 손 씻기를 3회로 가정할 경우 월 11억 4천만원 소요
 8) 15mm 구경 최대 출수량의 50%로 가정